

제 호

녹색제품 생산·유통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

1. 기관(단체)명:
2. 사업자등록번호:
3. 대표자: (전화번호:)
4. 주소: (전화번호:)
5. 사무소 소재지:
6. 지정기간:

「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위 기관을 녹색제품 생산·유통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

직인